

남북교역에서의 탈법위험과 제도적 대응방안

A Study on Illegal Risk in th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

남북교역에서의 탈법위험과 제도적 대응방안

A Study on Illegal Risk in th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정웅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II. 남북교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

1. 남북교역의 현황
 - 1) 남북교역의 개념
 - 2) 남북교역의 현황
2. 남북교역 관련 법제
 - 1) 남북한의 양자적 장치
 - 2) 남한의 법제도적 장치
 - 3) 북한의 법제도적 장치

III. 남북교역상의 주요 쟁점과 탈법위험-1: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
 - 1) 일반 원산지규정의 이해
 - 2)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규정
2. 원산지표시 위반 규정과 범죄실태
 - 1)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규정
 - 2) 원산지표시 위반 범죄의 실태분석

IV. 남북교역상의 주요 쟁점과 탈법위험-2: 전략물자 반출

1.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 1)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개념과 발전과정
 - 2)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동향
2.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
 - 1)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법령
 - 2)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 및 위반사례
3. 남북교역에서 탈법위험 실태

V. 결 론: 제도적 대응방안

1. 법규 정비
2. 조직 정비
3. 감시절차의 고도화
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참고문헌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민족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남북경협 활성화는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와 같은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첩경이 된다.

남북경협은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활로 모색과 우리 정부에서 취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아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남북간 물품의 반출입이라 할 수 있는 남북교역 역시 최근까지 상당한 발전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남북교역은 1949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남북교역정지에관한건」의 공포로써 그 명맥이 끊어져왔으나, 약 40년 후인 1988년 7.7선언의 발표로 남북한 무역거래가 재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년에 단순교역으로 출발한 남북교역은 1992년부터는 위탁가공교역으로 발전하였다. 나아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개성공업지구 개발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직접투자를 포괄한 경제협력 단계에서의 남북교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한 경제교류가 증대되면서 이에 수반하여 남북한 무역거래의 WTO체제에서의 지위,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판정 기준, 북한산 위장반입, 전략물자 반출, 분쟁처리와 형사사법공조 문제 등 남북교역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적지 않은 법적 쟁점과 과제가 부각되고 있

다. 예컨대 남북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제3국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까지 위장 반입된 물품은 주로 농수산물로서 이러한 위장반입 물품은 국내 농수산물유통시장을 교란시키고 농어민 등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¹⁾

남북한의 무역거래가 향후 남북경협 단계와 성과를 한 차원 높여 경제통합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교역에서의 탈법위험을 감소시키면서 교역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교역관련 제도들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교역제도의 구축은 종래 남북한 경제협력이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예측가능한 경협여건을 조성해주는 바, 이를 통해 남북한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남북교역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²⁾을 낮추면서 남북교역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남북교역관련 법·제도상의 문제제기 아래, 남북교역에서의 탈법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남북교역에 수반한 탈법위험 분석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

-
- 1) 이처럼 제3국 물품을 북한산으로 속이는 이유는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녹두와 고추 등에 200-600%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북한산은 민족내부거래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신제도주의에서 제기되는 거래비용 개념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생산비용(production costs) 함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경제적 교환(economic exchange)에 수반되는 제 비용을 총칭한다. 여기에는 제품 가치의 측정비용(measurement costs)과 교환에 수반되는 財産權 및 契約을 보호하고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enforcement costs)을 포함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성과는 단순히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일정한 제도적 여건 하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크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거래비용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노스(North, 1990), 윌리엄슨(Williamson, 1985), 에거트슨(Eggertsson, 1990)을 참조.

응전략의 모색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함축한 제도적 접근시각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적 접근 시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련 법제도 및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처방적(prescriptive), 정책 지향적(policy-oriented) 방법이 원용된다. 신제도주의 연구방법에서 중심인 개념인 제도(institution)에 대해 다양한 범주의 개념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노스와 같이 제도를 “인간 상호관계의 틀을 형성하는 제약조건”으로 넓게 파악하는 견해(North, 1990)가 있는 반면³⁾, 오스트롬과 같이 “특정한 행동을 허용하거나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규칙들”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제도를 매우 한정적으로 파악하는 견해(Ostrom, 1986)가 있다.

본 연구는 제도를 규칙(rule)과 같은 의미로 정의하는 오스트롬의 견해를 원용하고자 하며 그 결과로 본 연구의 범위는 法制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대응책 모색에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Ⅱ장에서 남북교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Ⅲ장과 Ⅳ장에서는 남북교역상의 주요 쟁점과 탈법위험으로서 원산지규정 및 전략물자 반출 문제를 분석한 뒤, 마지막 Ⅴ장에서는 남북교역 탈법위험에 대처한 법규와 조직 정비 등 제도적 대응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⁴⁾

3) 노스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인위적 제약을 제도로 파악하고, 그 차원(dimension)으로서 관습이나 행동양식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informal constraints)과 함께 法, 規則과 같은 공식적 제약(formal constraints)을 예시하고 있다(North, 1990: 4).

4) 본 보고서의 내용 중 남북교역 관련 법제, 원산지 관련 규정 등의 일부 내용은 정용의 선행 연구(2005a ; 2005b)에 제시된 바 있다.

II. 남북교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

1. 남북교역의 현황

1)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말하며, 반출과 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과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을 의미한다.⁵⁾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 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된다. 따라서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한다.⁶⁾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관세의 면제는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며 반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3국산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의미의 남북교역에는 단순한 반출·입 외에도 연계 교역, 임가공교역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5)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는 내국간의 거래로 간주하여 수출의 경우 반출, 수입은 반입이라 명명하고 있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

2) 남북교역의 현황

(1) 반출입 규모와 품목구조

남북한의 교역은 1988년 7.7선언 후 1989년 1천9백만 달러 규모(67건, 26개 품목)로 시작되어 북한 핵문제와 IMF 위기 등 교역여건의 악화를 겪으면서도 2004년 7억 달러 규모(13,893건, 634개 품목)로 증가하였다.
<표 2-1>

<표 2-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천달러)

년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19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3	105,719	-	16	5,547	300	57	111,266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572	92	173,426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698	103	186,59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975	158	194,547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644	244	287,291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3,383	258	252,039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991	365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4,810	449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6,510	488	333,437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7,394	578	425,148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7,754	549	402,95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8,796	572	641,73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11,209	588	724,217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12,893	634	697,040
'05.1-6	3,431	225	142,421	4,878	561	311,696	8,309	615	454,117
총 계	40,995	2,220	2,756,004	39,393	4,751	2,690,274	80,388	5,801	5,446,278

자료: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또 2005년에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등 실질교역의 증가, 개성공단개발 본격화, 금강산 관광사업 확대 등 경협사업 관련 교역의 증가, 대북 비료지원에 의해 남북한 교역은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4억5천만 달러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민간 상업적 차원의 실질교역(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 일부 농수산물 및 광산물에 한정되는 등 북한의 공급능력 한계에 따라 전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59%에서 2005년(1-6월) 39% 수준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05.7).

2005년 상반기중 품목별 반출 동향을 보면 대북 비료지원이 포함된 화학공업제품이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계류 17.2%, 의류제조용 원부자재 등 섬유류가 12.0%를 차지하고 있다. 반입의 경우 전체반입품목 중 농림수산물이 35.8%, 섬유류가 32.1%, 철강금속제품이 18.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표 2-2>

<표 2-2> 품목별 남북교역 현황(2005년 1-6월)

(천달러, %)

구분 품목	반출			반입		
	금액	증가율	구성비	금액	증가율	구성비
농림수산물	11,467	△49.3	3.7	50,986	△6.7	35.8
광산물	16,836	78.9	5.4	9,574	162.5	6.7
화학공업제품	129,233	33.8	41.5	60	△44.5	0.0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6,943	10.4	2.2	254	△19.7	0.2
섬유류	37,525	45.7	12.0	45,775	48.9	32.1
생활용품	5,195	63.6	1.7	1,806	△8.9	1.3
철강금속제품	30,743	137.8	9.9	26,395	27.5	18.5
기계류	53,684	250.6	17.2	1,781	3041.8	1.3
전자전기제품	15,216	11.8	4.9	5,386	43.7	3.8
잡제품	4,854	31.3	1.6	404	41.1	0.3
총 계	311,696	48.9	100.0	142,421	22.6	100.0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북한으로부터의 전체 반입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농림수산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3국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주요 적발품목 역시 고사리, 건고추, 녹두, 대두, 더덕, 명태, 버섯 등 농수산물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류 제품에서도 위장반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북한산 위장반입 품목이 농수산물에 집중되고 있으나 남북교역 활성화가 심화될수록 의류제품 등 가공도가 높은 2차 제품들도 북한산 물품에 대한 무관세를 악용하여 위장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 위탁가공교역 및 개성공단사업

남북한간 위탁가공교역은 <표 2-3>에서와 같이 1992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며 전체 교역규모의 증가를 견인하여 왔으며, 특히 2000년도의 경우 전체 교역액 중 위탁가공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입이 47%, 반출이 21%를 차지하였다.

<표 2-3> 연도별 위탁가공교역 현황

(천달러, %)

년도	반 입		반 출		합 계	
	전체	위탁가공	전체	위탁가공	전체	위탁가공
1992	162,863	638(0.4%)	10,563	200(2%)	173,426	839(0.5%)
1993	178,167	2,985(1.7%)	8,425	4,023(48%)	186,592	7,008(3.8%)
1994	176,298	14,321(8.1%)	18,249	11,343(62%)	194,547	25,663(13%)
1995	222,855	21,174(9.5%)	64,436	24,718(38%)	287,291	45,892(16%)
1996	182,400	36,238(20%)	69,639	38,164(55%)	252,039	74,402(30%)
1997	193,069	42,894(22%)	115,270	36,175(31%)	308,339	79,069(26%)
1998	92,264	41,371(45%)	129,679	29,617(23%)	221,943	70,988(32%)
1999	121,604	53,736(44%)	211,832	45,883(22%)	333,437	99,620(30%)
2000	152,373	71,966(47%)	272,775	57,224(21%)	425,148	129,190(30%)
2001	176,170	72,579(41%)	226,787	52,345(23%)	402,957	124,924(31%)
2002	271,575	102,789(38%)	370,155	68,388(18%)	641,730	171,177(27%)
2003	289,252	111,639(39%)	434,965	73,370(17%)	724,217	185,009(26%)
2004	258,039	107,746(42%)	439,001	68,213(16%)	697,040	175,959(25%)
'05.1-6	142,421	52,575(37%)	311,696	30,000(10%)	454,117	82,575(18%)
총 계	2,756,004	732,651(27%)	2,690,274	539,664(20%)	5,446,278	1,272,315(23%)

* ()는 위탁가공교역 구성비
 자료: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그러나 전체 교역규모의 증가추세에 불구하고 이후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여 2004년 반입은 42%, 반출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5년 상반기에도 반입 37%, 반출 10%의 비중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반입품목 중에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로 위탁가공교역에서 의류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과 달리 개성공단 개발이 최근 남북교역 활성화에 새로운 주역이 되고 있다. 2005년 상반기 남북교역의 증가세는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건설장비와 자재, 현지 공장의 상품생산을 위한 시설재 및 원자재의 대북반출에 힘입은 바 크다.

<표 2-4>에서와 같이 2005년 상반기에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반출(7천568만 달러)이 대북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를 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개성공단사업 관련 반출입(7천832만 달러)이 전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달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하여 남한으로 반입한 완제품은 주방용품과 의류가 주요 품목인데 향후 입주업체 가동이 본격화되면 2005년 상반기에 전체 남북교역액의 2% 미만에 머물던 개성공단사업 관련 반입액(264만 달러) 또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개성공단사업 현황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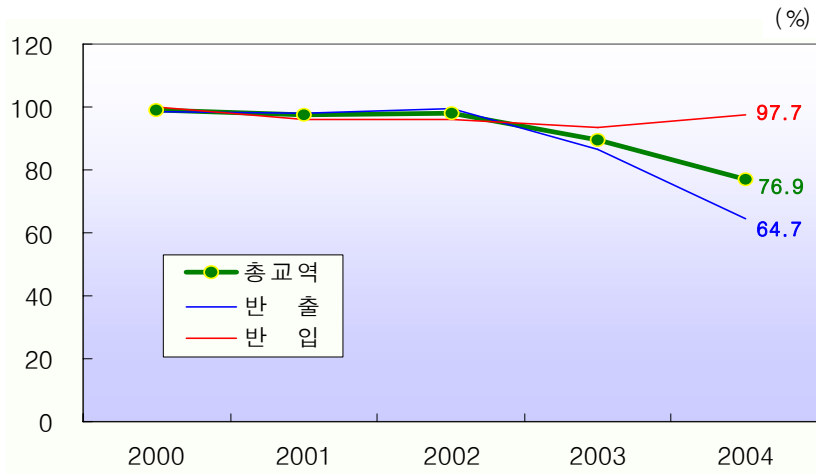
년도	반 입		반 출		합 계	
	전 체	개성공단	전 체	개성공단	전 체	개성공단
2004	258,039	52	439,001	41,634	697,040	41,686
2005년 1월	26,745	179	22,732	6,349	49,477	6,527
2005년 2월	19,980	127	26,954	9,130	46,934	9,257
2005년 3월	30,252	1,070	39,486	12,311	69,737	13,381
2005년 4월	23,273	200	29,489	11,026	52,762	11,226
2005년 5월	22,828	810	76,956	13,730	99,784	14,540
2005년 6월	19,343	252	116,079	23,135	135,422	23,387
소계 '05.1-6	142,421	2,638 (1.9%)	311,696	75,682 (24%)	454,117	78,319 (17%)
총 계	2,781,352	4,476	2,792,530	133,817	5,573,882	138,293

* ()는 개성공단사업 구성비
 자료: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3) 운송로별 교역 현황

운송로별 교역 상황은 점차 항구 이외에 육로나 항공편 등을 이용한 교역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2000년까지 거의 총 교역의 100%를 점하고 있던 항구(선박)를 통한 교역이 전체의 3/4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 같은 추세는 특히 반입보다 반출의 경우가 더욱 두드러진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반입의 경우에는 항구를 통한 경우가 최근까지 거의 95%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하여, 반출은 2000년 거의 100%에 가깝던 항구 교역 비중이 전년의 경우 60%대까지 낮아졌다.

<그림 2-1> 항구를 통한 대북교역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표 2-5> 운송로별 대북교역 동향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교역	금 액	425	403	642	724	697	
	증가율	27.2	-5.2	59.3	12.8	-3.7	
	항 구	금 액	421	392	630	647	536
	(비중)	(99.1)	(97.3)	(98.1)	(89.4)	(76.9)	
	기 타	금 액	4	11	12	77	161
	(비중)	(0.9)	(2.7)	(1.9)	(10.6)	(23.1)	
반 출	금 액	273	227	370	435	439	
	증가율	28.8	-16.9	63.2	17.5	0.9	
	항 구	금 액	269	223	369	377	284
	(비중)	(98.5)	(98.2)	(99.7)	(86.7)	(64.7)	
	기 타	금 액	4	4	1	58	155
	(비중)	(1.5)	(1.8)	(0.3)	(13.3)	(35.3)	
반 입	금 액	152	176	272	289	258	
	증가율	25.3	15.6	54.2	6.5	-10.8	
	항 구	금 액	152	169	261	270	252
	(비중)	(100.0)	(96.0)	(96.0)	(93.4)	(97.7)	
	기 타	금 액	-	7	11	19	6
	(비중)	(-)	(4.0)	(4.0)	(6.6)	(2.3)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2. 남북교역 관련 법제

1) 남북한의 양자적 장치

남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0년도에 들어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실로 남북한은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합의서’라 함)를 채택하였고, 이 남북합의서는 1992년 2월 19일 제 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었다. 남북합의서 전문에서는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북한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잠정적 특수관계에 있는 남북한은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를 실시하기로 약속하였다.⁷⁾ 여기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는 남북한간 무역거래가 국가간의 무역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 1992년 9월에는 남북합의서의 실천지침 기능을 수행할 부문별 부속 합의서 중의 하나로서 「교류협력부속합의서」(이하 ‘교류합의서’라 함)가 채택되었다. 교류합의서는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다.⁸⁾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한 ‘민족내부 교류인 물자교류’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이 교류합의서에 따라 남북한은 서로간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일련의 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한 무역거래는 양자적인 법제도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되었다(박노형, 2000: 40-42).

7) 남북합의서 제15조.

8) 교류합의서 제1조 10항.

2000년도에 들어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남북경제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00년 9월 경제협력 실무접촉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4대 경협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투자 및 교역분야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기에 이르렀다.⁹⁾

이후 남북 교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통관, 통신, 검역합의서(2002.12.8), 차량운행합의서(2002.12.6), 해운합의서(2002.12.28) 및 해운부속합의서(2004.5.28), 상사중재위 구성·운영합의서(2003.10.12),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합의서(2004.1.29), 열차운행합의서(2004.4.3) 등이 체결되어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¹⁰⁾

이처럼 남북경협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경협실무접촉의 시작, 그리고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의 장관들이 남북경협합의서 정식 서명 및 발효 등의 절차를 거친 남북 경협합의서 현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9) 남북 4대 경협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체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4대 경협합의서는 체결동의안이 국회본회의(2003.6.30)를 통과하여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발표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정식 발효(2003.8.20)되었다.

10) 이중 개성공업지구 통관, 검역합의서, 차량운행합의서, 상사중재위 구성·운영합의서,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등 5개 경협합의서는 국회본회의를 2004년 9월 23일에 통과하였다. 이어서 개성공업지구 통신 합의서, 열차운행합의서, 해운합의서 및 해운부속합의서 등 4개 경협합의서는 국회본회의를 2004년 12월 9일에 통과함으로써 동 합의문들에 대한 내부절차를 완료하였다.

<표 2-1> 13개 남북 경협합의서 현황

합의서 명칭	2000	2002	2003	2004	2005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서명 (12.16)		발효 (8.20)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서명 (12.16)		발효 (8.20)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서명 (12.16)		발효 (8.20)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서명 (12.16)		발효 (8.20)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서명 (12. 8)			발효 (8.1)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서명 (12. 8)			발효 (8.1)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서명 (12. 8)			발효 (8.1)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서명 (12 .6)			발효 (8.1)
동·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임시도로통행의 군사적보장을위한잠정합의서			서명 (1.27)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 에 관한 합의서			서명 (7.31)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명 (10.12)		발효 (8.1)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 류에 관한 합의서				서명 (1.29)	발효 (8.1)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서명 (4.13)	발효 (8.1)
남북해운합의서				서명 (5.28)	발효 (8.1)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서명 (5.28)	발효 (8.1)

남북한간의 이러한 합의서들과 함께 남북한 교역 분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2003년 7월 31일 제2차 남북경협실무협의회에서 채택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원산지합의서’라 함)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 원산지합의 채택 이전까지는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 민족내부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령에 따라 관세를 비과세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여 제3국산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위장 반입에 대한 단속을 위해 당국에서는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는 등 엄격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남북교역촉진의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북측도 북한산 물품에 대한 이미지제고와 남측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확대 등을 위하여 남북한간 원산지 확인채널 구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채택하게 된 남북한간 원산지합의서는 남북교역에서 매우 획기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즉 원산지합의서는 남북한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남북교역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석오, 2003).

2) 남한의 법제도적 장치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남한의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남북한 양측의 공동노력에 앞서 진행되었다. 즉, 남한은 1988년 7.7선언을 통하여 남북한 무역의 문호개방을 선언함과 동시에 남북한 무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함을 선언하였다. 또한 남북한 무역거래에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1988년 10월 「남북물자교류지침」이 제

정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의 민간기업이 북한물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 경제인의 상호방문을 위하여 「남북경제인 상호교류제도」도 마련되었다. 1989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발표되었으며, 마침내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라 함)과 「남북교류기금법」이 제정되어, 남북한 무역거래를 위한 국내법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

물론, 이것으로 남북한 무역거래의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것은 아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령은 준용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다.¹²⁾ 또 남북교류협력법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합의서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남북교류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국내법에서는 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법리상 명쾌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직도 남북한 관계에 관한 국내법상 제도가 더욱 정비, 개선될 필요성이 발견된다(박노형, 2000: 44).

남북교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에는 각각 2개의 시행령과 2개의 시행규칙¹³⁾, 그리고 이들 법령의 운영

11)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2항 단서는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규정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 시행령 제50조 2항, 3항 참조.

12) 남북교류협력법 제21조와 제26조 1항에서는 각각 출입국관리법과 대외무역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3항, 동 시행령 50조에 의해 외국환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이 준용된다.

13) 남북교류협력법은 장별 편성을 하지 않은 채 30개 조문을 나열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은 모법과 달리 장별 편성을 하여 총 6개 장 53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모법의 위임을 받아 그 미비점을 상당히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시행규칙은 주로 서식에 관해 10개 조문을

과 구체적인 실시를 위해 발령된 하위법규들이 있다.

이들 중 남북교역과 관련된 중요한 법규들을 들면, ① 관세청 고시로서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② 통일부 고시로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남북출입장소에관한고시」,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③ 농림부 고시로서 「남북한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한검역요령」, ④ 재정경제부 고시로서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북한지역관광에따른환전지침」 ⑤ 산업자원부 고시로서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발급에관한고시」 등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남북교역 관련 법규들은 고시, 요령 혹은 지침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들은 통일부와 관세청뿐만 아니라 그 외 정부 부처들이 각기 필요에 따라 관련된 발령을 내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채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경우 관세청의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와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통일부의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의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발급에관한고시」 등 각 부처별 고시로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

「남북교류협력법」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남북관계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촉진해 나가기 위한 법규의 제정이 요청되었다. 즉,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남북합의서의 체결·공포,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두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마찬가지로 장별 편성을 하지 않고 14개의 조문을 나열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20개 조문) 및 시행규칙(3개 조문)과 더불어 다른 기금법령과 유사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적 합의 및 초당적 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해 새롭게 남북한 관계를 규정할 법규의 제정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 법사위에서는 통외통위 대안을 심사·의결하여 2005년 12월 8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제6조~제14조)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관련 규정 등, 제3장에서는 남북회담대표 등(제15조~제20조)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장의 남북합의서 체결(제21조~제23조) 조항에서는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및 효력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에 대한 경과조치(2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법은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간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이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법적 근거에 입각한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한 것이며, 대북정책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법률이다(통일부, 2005.12: 2-11).

3) 북한의 법제도적 장치

북한은 남북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남한과 같이 명시된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은 최근 발표된 자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04.8)에 의할 때 대외무역과 관련한 법제로 북한영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역법」, 「세관법」 등의 일반 법제¹⁴⁾와 특구지역에서 적용

14) 일반 법제의 범주에는 「국경동식물검역법」(제정 1997.7.16, 개정 1998.12.3), 「국경위생검역법」(제정 1996.1.24, 개정 1998.12.3), 「기술수출입법」(제정 1998.6.10, 개정 1999.3.11), 「대외경제계약법」(제정 1995.2.22, 개정 1999.2.26), 「대외경제중재법」(1999.7.21), 「대외민사관계법」(제정 1995.9.6, 개정 1998.12.10), 「무역법」(1997.12.10 제정, 1999.2.26 개정), 「보험법」(제정 1995.4.6, 최종개정 2002.5.16), 「세관법」(제정 1983.10.14, 최종개정 2001.7.26), 「수출입상품검사법」(제정 1996.1.10, 최종개정 1999.8.19), 「외화관리법」(제정 1993.1.31, 최종개정 2002.2.21), 「원산지명법」(2003.8.27), 「소프트웨어

되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기업법」 등 특구관련 법제¹⁵⁾ 등을 두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조항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내지 해외조선동포의 규정에 남한기업인이 포함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남북교역은 당국의 정책적 해석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배태하여 왔다.

또한 북한은 대외경제법제에서 해당 법적 문제의 해결에 대해 국제규범과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국제규범에의 가입을 보류하고 있거나 아직 미가입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대북경협에 대해서 북한의 국내법에 의존하는 일방적인 약속을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¹⁶⁾ 이러한 면에서 북한의 국내적 입법조치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제 정비 움직임은 남북간의 교역 확대와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 북한 대외경제법의 미흡한 대외협력 및 교역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들 법제의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개방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최근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에 보듯이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들 법제는 과거 남한을 명백히 의식한 규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북한 법규정과는 달리 남한에 대한 보다 분명한 배려와 혜택에 대하여 법적 보장을 하고

산업법」(2004.6.30), 「토지임대법」(제정 1993.10.27, 개정 1999.2.26) 등을 들 수 있다.

15) 특구와 관련된 법제의 범주에는 「개성공업지구법」(제정 2002.11.20, 개정 2003.4.24), 「가공무역법」(2000.12.26), 「금강산관광지구법」(제정 2002.11.13, 개정 2003.4.24),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정 1993.1.31, 최종개정 2002.11.7), 「외국인기업법」(제정 1992.10.5, 개정 1999.2.26), 「외국인투자법」(제정 1992.10.5, 개정 1999.2.26),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제정 1993.1.31, 최종개정 2002.11.7), 「외국투자은행법」(제정 1993.1.2, 최종개정 2002.11.7), 「합영법」(제정 1984.9.8, 최종개정 2001.5.17), 「합작법」(제정 1992.10.5, 개정 1999.2.26) 등을 들 수 있다.

16) 북한은 「대외경제중재법」 제7조에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및 다른 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투자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국제협약, 예컨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있다(장명봉, 2004). 예컨대 「개성공업지구법」은 제46조에서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의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북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 절차로 해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미 합의한 남북경협보장 합의서 중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¹⁷⁾

이처럼 북한은 종전의 나진·선봉 외에 신의주(2002.9)¹⁸⁾ 금강산(2002.10), 개성(2002.11) 특구를 추가하면서 해당 특구법을 제정하고 또한 2004년까지 20건의 관련법 하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원산지명법」(2003.8)을 채택함으로써 국제경제질서에서의 적응과 북한산 상품의 신인도제고를 도모하고 있다.¹⁹⁾ 이러한 북한 국내 법규들의 정비내용과 방향은 향후 남북교역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은 남측에서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을 준비하는 동안 북한은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1182호)으로 「북남경제협력법」(총 27條)을 채택하고, 「민주조선」(2005.7.29)을 통해 동법 제정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²⁰⁾ 이 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목적·원칙 등을 규정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 법규로서,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민족경제

17) 또한 「개성공업지구법」 부칙 제2조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개성공단사업상 남북간 체결되는 합의서에 대해서도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9조와 부칙 제2조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18) 북한은 2002년 7월 내부 경제개혁 조치를 취한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9월 12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하고 9월 19일 발표함으로써 신의주를 나진·선봉에 이은 북한 제2의 특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행정구 초대장관 양빈의 구속과 중국의 반대 등으로 북한 내각은 2004년 8월 신의주 특구 폐지를 결정했다.

19) 「원산지명법」은 제5조에서 “원산지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7조에서 “국가는 원산지명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통일부는 지난 2005년 12월 7일 남북경협사무소를 통해 동법 전문을 입수하였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¹⁾

또한 본 법 제4조에서는 ①全民족의 이익 우선 ②민족경제 균형발전 보장 ③호상존중과 신뢰 ④유무상통을 협력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의 적용범위는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기업소·단체와 남측의 법인·개인에게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으며²²⁾, 남북경제협력은 북측 또는 남측지역에서 하며,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도 가능²³⁾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남북경협의 방식에 대해서도 당국간 합의·해당법규·계약에 기초한 직접거래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경협사업 물자의 반출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민족내부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²⁴⁾하고자 하였다.

결국 북한이 동법을 제정한 목적을 찾아본다면,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민족공조론」을 경제적 측면에서 규범화함으로써 남북 경협을 둘러싼 내부 혼선을 방지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 확대 등 경협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남북 경협에 대해 민족 내부거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협력사업 절차 등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남북경협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 북남경제협력법 제1조

22) 북남경제협력법 제3조 및 제4조

23) 북남경제협력법 제9조

24) 북남경제협력법 제7조 및 제19조

III. 남북교역상의 주요 쟁점과 탈법위험-1: 원산지규정

1.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문제의 기원: 민족내부거래성

남북한간의 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국제법적 관계로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완전한 국내법적 질서에 포함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민족 내부적인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은 국제법상 원산지 인정 문제를 배태한다.

남북한은 1992년에 상호 물자교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보고 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²⁵⁾ 2000년에 체결된 남북 4대 경협합의서 전문에서도 남북간 경제교류가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또 국내법상으로도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북한산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⁶⁾ 1995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은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족내부거래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25) 남북합의서 제15조, 교류합의서 제1조.

26)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2항.

27)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정 1995. 1. 3) 제5조(민족내부거래).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국내법상의 남북 반출입에 대한 모호하고 비대칭적인 규정 문제²⁸⁾를 차치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반출입 물품의 무관세 적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국내법적으로 남북경제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한데서 발전하여 현실적으로 남북교역의 확대 추세가 심화되어갈수록, 국제사회로부터 남한의 북한에 대한 우대가 WTO체제의 최혜국(MFN: Most-Favoured-Nation) 대우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남북한이 자신들끼리의 관계를 그 무엇이든 주장하더라도, 남북한이 엄연히 UN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다른 WTO회원국들은 남북한 무역거래도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제무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GATT I조는 WTO회원국이 WTO회원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회원국에게 무조건적으로 즉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MFN 의무란 어느 특정 국가 또는 그 국가 국민을 최소한(at least as favourable as) 다른 어느 국가를 대우하는 만큼 대우하는 의무를 말한다. 특히, GATT의 MFN 의무란 각 WTO회원국(any contracting party)이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 어느 다른 국가에게(any other country), WTO회원국이든 아니든,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모든 WTO회원국(all other contracting parties)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GATT I조에서 규정된 MFN대우 의무는 GATT는 물론이고 WTO체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따라서, 남북한 무역거래의 경우 WTO회원국인 남한은 WTO회원국이 아닌 북한에게 부여한 무관세 대우 등 특혜를 미국과 같은 다른 WTO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8)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제1항은 남북교역에 대해 본래 외국과의 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대외무역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 50조 4항은 북한으로 물품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 시행령 제 51조 1항과 3항, 53조 1항은 반출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과세와 관련하여 반출은 수출로 보되, 반입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비대칭 규정을 두고 있다.

(박노형, 2000: 45-46; 문준조, 2002: 60-61). 향후 남북간 물자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을 견지하며 남한이 MFN대우 의무의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WTO협정 IX조에 규정된 ‘의무면제’(waiver)를 원용하거나, 또는 쌍무적 협정에서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등의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2) 원산지규정

남북교역의 주요 법적 쟁점으로 전략물자 반출과 민족내부거래성의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증폭시킬 남북교역의 활성화와 확대 추세를 살펴 보았다. 전략물자 반출과 관련해서는 美國産 기술이나 부품의 대 테러 지원국 수출에 대비 EAR가 마련되어 있고 한국정부 역시 관련 국내법 체계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남북교역을 상업적 거래 측면에서 볼 경우, 보다 어려운 문제는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에서 파생되고 있다. 남북합의와 남북교류협력법령에 따라 北韓産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산 반입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원산지 판정기준과 표시, 확인절차 등 원산지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 국제사회로부터 남북교역에 대한 무관세 적용의 문제제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싱가폴 FTA와 한·EFTA FTA 등 쌍무적 협정에서 남북교역이 사실상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부터는 북한산 물품이 한국산 물품과 같이 취급되어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역물품 원산지규정 위반 범죄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우선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현 원산지규정에 대해 분석,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1) 일반 원산지규정의 이해

① 원산지 및 원산지규정의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역’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도 포함된다. 교토협약(Kyoto Convention)²⁹⁾상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에 의하면 원산지 국가의 개념에 국가군(a group of countries)이나 국가의 특정지역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으로 국제법규, 법률, 규정, 판례 및 행정결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WTO 통일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조에서는 원산지규정을 “회원국이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각종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산업·무역정책, 무역장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원산지제도는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e) 확대 등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되는 추세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생산과 무역 과정이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지고, 원산지에

29) 정식명칭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이다. 1952년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로 출범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1973년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을 제정하였다. 교토협약은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로 무역원활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산물로서 부속서 D.1, D.2, D.3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증명서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 수입규제가 달라져 무역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② 원산지규정의 체계

원산지규정의 내용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정기준 등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 증명서류의 작성·제출 및 세관당국의 확인과정 등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된다. 원산지판정기준 등 실체적 규정은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과 특정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분류된다.

원산지규정은 적용목적에 따라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원산지표시, 쿼타 등 관세특혜 이외의 목적에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된다.

특혜원산지규정에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경제통합체나 개도국간의 특혜무역협정인 GSTP³⁰⁾, TNDC³¹⁾와 같이 특정 국가간에 쌍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GSP³²⁾제도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작성 등 무역정책상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권오, 2005: 164-167).

30)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제도(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

31)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제도(protocol on Trade Negoti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32)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③ 원산지판정기준

WTO 통일원산지 규정 등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도 동 기준을 따르고 있다.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은 어떤 물품이 1개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생산 및 사육, 번식된 경우에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³³⁾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은 어떤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이다. 실질적 변형 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에 의하나,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으로 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동 고시된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³⁴⁾ 실질적 변형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세번변경기준(Tariff Shift Rule) - 원료(Input)와 완제품(Output)의 세번(국제적 분류기준인 HS 품목번호)을 비교하여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한다. 현행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³⁵⁾ 그러나, HS가 변경되거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운송, 보존을 위한 포장, 상표

33) 「대외무역법」 제24조 1항 및 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1항 참조.

3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2항 및 3항 참조.

35) HS 코드는 모두 10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앞에서 두자리를 류(chapter), 4자리를 호(heading), 6자리를 소호(subheading)라고 한다. 2자리에서 4·6·10자리로 갈수록 대·중·소분류로 세분화된다. 세번변경기준은 HS 2단위 변경(CC: Change of Chapter), 4단위 변경(CTH: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 변경(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등이 있다. HS 4단위 변경(6단위 변경)이란 원료의 HS 번호와 완제품의 HS 번호를 비교하여 앞에서 4단위(6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라이터 노즐 및 부품(HS 9613.90)으로 일회용 라이터(HS 9613.10)를 만드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이 CTSH이면 원산지가 인정되고, CTH이면 불인정된다.

표시, 절단, 조립, 선별 등의 단순한 공정만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³⁶⁾ 이를 최소가공공정기준(Minimal Operation Rule) 혹은 불인정공정기준(Non-qualifying Operation Rule)이라고 한다.

b. 부가가치기준(Value-added Rule) -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비율(부가가치율)을 산출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당해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현행 대외무역법령은 부가가치율 35% 이상을 생산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이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카메라 1개 품목이다(『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2). 관세법령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를 위해 50% 이상 부가가치 생산국을 원산지로 규정하고, 그 적용대상은 최빈개발도상국(48개국)에서 생산되는 80개 품목에 제한하고 있다.³⁷⁾

c.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Rule) -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이다. 예컨대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 TV는 브라운관(CRT)생산국이 원산지라고 규정하는 경우이다. 현행 우리나라 대외무역법령에서는 의류·수건류·양말류·넥타이 등 섬유류와 가죽 및 그 고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다(『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2). 즉 재단한 직물을 봉제하여 완성한 의류의 경우 봉제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포 및 타월 등 방직제품은 제직 또는 편직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36)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1항 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7항 참조.

37) 『관세법』 제76조 3항,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대통령령 제17469호) 제5조 참조.

(2)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규정

현재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규정은 일반교역물품과 개성공단반입물품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다. 즉,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서 제조·가공된 물품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과 원산지를 표시, 증명하는 절차가 서로 다르다.

① 일반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규정

a. 법적 근거

일반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남북합의와 국내 법령, 고시 등 법적 근거는 <표 3-1>와 같다.

<표 3-1> 일반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관련 법규

	근 거	주 요 내 용
남북 원산지 합의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 서」	- 2003. 7.31일에 채택(2003.9.29 발효)된 남북 간의 합의서로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판정기 준, 확인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음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
통일부 고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반출·반 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원산지규정은 없음. 다만,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을 공고하고,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 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 남북 원산지 합의서를 근간으로 2003. 9.29 제정·시행된 통일부고시로서 남북교역물품 의 원산지 판정기준,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05. 3.23일에 개정(통일부 고시 제2005-6호)되어 그 동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원산지표시 부분이 추가되었음
관세청 고시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 남북교역물품에 대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 을 기하기 위해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따른 처 리지침을 규정함
산자부 고시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발급에 관한 고시」	-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대한상공 회의소의 원산지발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 정함

b. 원산지판정기준

일반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하여 원산지합의서 및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에서는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불인정공정기준(최소가공공정기준)을 정하고는 있으나,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해서 “물품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라고만 정의하고 있으며,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원산지합의서에서는 추후 남북원산지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로 하였으나 2003년 12월 17-20일 평양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또 2005년 7월 9-12일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제2차 원산지확인 실무접촉을 2005년 9-10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한편, 통일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에서는 원산지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완전생산기준과 HS 6단위변경기준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품목별로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공정에 대해서는 원산지합의, 통일부고시, 관세청고시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³⁸⁾ 여기서 불인정공정기준에 따른 물품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38) 원산지합의서 제4조 2항,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5조 2항,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22조 4항 참조.

염장, 단순가열,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등이 포함된다.

c. 원산지표시

남북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표시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에서는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는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통일부고시에서는 원산지표시에 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었다.

다만,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선전문구 등의 표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⁹⁾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품목은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품목은 없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18조 1항 단서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반입자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과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한 물품(현재 미지정)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Made in DPRK’ 또는 ‘북한산’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가 남한인 경우에는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⁴⁰⁾

d. 원산지증명서

일반 남북교역물품의 경우에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북한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⁴¹⁾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이다.⁴²⁾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⁴³⁾

40)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8조.

41) 원산지합의서 제2조 1항,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3조 1항.

42) 원산지합의서 제3조,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4조.

43) 원산지합의서 제5조 1항,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6조 1항.

② 개성공업지구 반입물품의 원산지규정

a. 법적 근거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및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사항은 2005년 3월 10일 제정 시행된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0호) 및 2005년 3월 23일 개정 시행된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2005-6호)에 규정되어 있다.<표 3-2>

<표 3-2> 개성공업지구 반입물품의 원산지관련 법규

	근 거	주 요 내 용
관세청 고시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 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남한으로 반 입되는 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및 원산지표 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통일부 고시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 에관한고시」	- 2005. 3.23일 개정된 내용에 그 동안 규정 되어 있지 않았던 원산지표시 부분을 추가 하고(제8조),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반입물품 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음(제11조)

b. 원산지판정기준

개성공업지구에서 제조·가공되어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남북교역물품의 경우와 같은 완전생산기준, HS 6단위변경기준, 불인정공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⁴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는데 뚜렷한 차이가 있다.

즉, 남한의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남한산 직접 재료비의 60% 이상을 남한에서 일시 반출하여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하여 다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남한산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⁴⁵⁾ 지분요건 60%와 재료비요건 60%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남한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대부분 남한의 업체가 남한의 기술과 자본으로 설립하였다는 특수성과 원산지 판정기준의 일반적인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c. 원산지표시

일반 남북교역물품의 경우와 같이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 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물품(현재는 미지정) 이외에는 원산지 표시의무는 없다. 다만, 원산지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가 남한인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고,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원

44)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3-1-1조.

45)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11조 2항.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3-3-1조.

산지표시는 Made in DPRK(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등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⁴⁶⁾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개성공단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으로 판정된 물품의 경우에 일반 교역물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표 3-3>에서와 같이 반드시 Gaeseong(개성)이라는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최양식, 2005).

46)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3-2-5조.

<표 3-3> 일반 교역물품과 개성공업지구 반입물품 원산지표시규정 비교

구 분	일반 교역물품	개성공업지구 반입물품	비 고
표시의무 유무	×	×	선 택
별도지정물품 표시의무	○	○	미지정
제3국산 표시의무	○	○	
남한산	Made in Korea, 한국산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	
북한산	Made in DPRK, 북한산	Made in DPRK(Gaeseong), 북한산(개성)	

d. 원산지확인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교역물품의 경우와는 달리 민경련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는 개성공업지구 반입물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대신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북한산 또는 남한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입신고서 생산물품원산지신고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⁴⁷⁾

또한 원산지신고에 있어서 원산지판정 특례요건(남한지분60%+남한재료60%)을 충족한 업체가 제조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좀 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동일규격의 물품을 재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⁴⁸⁾

e. FTA 협정상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

이상에서 언급한 원산지판정기준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반입되어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판정기준과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한·싱가폴 FTA 협정 등에서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47)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3-2-1조.

48)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3-2-2조 2항.

따르게 된다.

한·싱가폴 FTA와 한·EFTA FTA⁴⁹⁾의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에 대한 남한 원산지인정은 남북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4년 11월에 타결된 한·싱가폴 FTA의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원산지인정 특례와 2005년 7월에 타결된 한·EFTA FTA의 제한적 역외가공생산품의 원산지인정 특례조항⁵⁰⁾에서 보듯이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하는 협상 결과는 남북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FTA 특례조항으로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에 대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협정상의 선례를 마련하였는 바, 향후 쌍무적 FTA 협상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의 해외판로 여건을 확보해나갈 수 있다.

한·싱가폴FTA, 한·EFTA FTA협정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어 싱가포르 등 상대 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 협정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상 특혜의 대상이 된다. 한·싱가폴FTA의 경우 농수축산물(HS1류-12류)을 제외한 전품목이 특혜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동 협정상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수입국인 싱가포르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최양식, 2005).

49)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됨.

50) 한·EFTA FTA에서 도입된 제한적 역외가공생산품의 원산지특례조항은 사실상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FTA측과 협상과정에서 EFTA측이 개성공단이라는 특정지역을 협정문에 명시할 경우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상호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협정문에 대상지역을 표시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대신에 특례범위를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되거나 생산될 품목위주(HS 6단위 기준 153개 품목)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김석오, 2005).

<표 3-4>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 비교

구 분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표시	비 고
국내 고시	-완전생산기준, HS 6단위변경기준, 불인정공정기준 -특례기준: 소유지분 60% 이상인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남한산 직접재료를 60% 이상 남한에서 일시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반입하는 물품은 남한산으로 간주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표시 -수출물품은 수입국 규정에 따름	일반 남북교역물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 HS 6단위변경기준, 불인정공정기준만을 규정
한· 싱가폴 FTA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남한산 물품과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싱가포르 규정에 따라 표시	-HS 1류 내지 12류(일부제외)에 해당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특혜적용대상에서 제외
한· EFTA FTA	-제한적 역외가공생산물품의 원산지인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남한산 물품으로 인정 -제한적 역외가공생산물품의 인정요건: 비원산지재료가격 40% 이하 + 총재료비중 원산지재료가격 60% 이상	上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될 품목위주로 제한(HS 6단위 기준 153개 품목) -지역제한이 없으므로 개성공업지구 외에 기타 북한지역과 중국,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가능

2. 원산지표시 위반 규정과 범죄실태

1)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구성하는 제반 내용 중 가장 핵심은 <원산지판정>과 <원산지표시>의 개념이며 이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여야 한다. 요컨대 <원산지판정>이라 함은 어떤 물품이 특정한 지역 혹은 국가 産이라는 자격을 부여(판정)하는 것이며, <원산지표시>라 함은 이처럼 원산지가 결정된 물품에다 ‘Made in DPRK(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등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 비유하면 이름을 짓는 것을 원산지판정이라 할 수 있고, 이름표를 다는 것을 원산지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원산지판정의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결정된 원산지에 상응하는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물품의 유통경로일 것이나, 특혜관세 규정을 악용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특히 북한산 물품의 경우는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현행 규정을 살펴보고 최근 빈발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범죄의 실태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1)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규정

① 원산지표시의무 대상물품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공고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⁵¹⁾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원산지가 법령에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관을 제한하고 있으며⁵²⁾ 고의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남북교류법 및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남북교역대상물품,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양허관세 적용물품,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적용 대상물품 등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WTO일반협정 및 IT협정 적용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현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HS 4단위기준 653품목으로 전체(1,244품목)의 52.5%이고, HS 10단위기준은 6,963품목으로 전체(11,261품목)의 61.8%이다.⁵³⁾

② 위반유형

a. 허위표시

허위표시란 비원산지국가에서 생산된 것처럼 원산지를 직접 표시한 경우와 원산지를 직접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비원산국을 원산국으로 인식할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⁵⁴⁾

b. 오인표시

오인표시는 원산지 그 자체를 허위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51)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

52) 「관세법」 제230조.

5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1 참조.

54) 「대외무역법」 제23조 3항 1호.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제반표시를 말한다.⁵⁵⁾

c. 손상·변경

표시된 원산지를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경우이다.⁵⁶⁾

d. 미표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미표시)와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도 찾아볼 수 없는 무효표시가 포함된다.⁵⁷⁾

e. 부적정 표시

상기 유형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구매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또는 쉽게 제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로서 표시요건위반이다. 오인우려 표시, 표시단위 위반, 표시위치 위반, 표시방식 위반, 표시의 크기 색상, 철자법 등 부적정, 표시언어 위반, 생산 및 국가명 표시방식위반, 조립과정에서 표시가 가려졌으나 다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⁵⁸⁾

55) 「대외무역법」 제23조 3항 1호.

56) 「대외무역법」 제23조 3항 2호.

57) 「대외무역법」 제23조 3항 3호.

58) 「대외무역법」 제23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53조 1항.

③ 벌칙 규정

원산지표시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시 허위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원산지표시를 허위·오인·무표시·손상·변경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며,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훼손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하여 처벌조항을 정하고 있다(류수현, 2005).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은 크게 형사처벌대상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시정조치 등으로 구분한다.

a. 형사처벌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관세법상의 형사처벌은 허위표시로 인한 관세포탈죄⁵⁹⁾, 부정수출죄⁶⁰⁾와 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허위신고죄⁶¹⁾, 분할·재포장하는 물품 등 수입 후 다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의무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허위신고죄⁶²⁾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포탈범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정수출범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신고사범에 대하여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⁶³⁾에 처하고 허위신고죄 중 세관장의 의무요구를 이행하지 아

59) 『관세법』 제270조 2항.

60) 『관세법』 제270조 3항.

61) 『관세법』 제276조 1항 3호.

62) 『관세법』 제276조 2항 4호.

니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⁶⁴⁾에 처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보면 ㉠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또는 표시를 손상·변경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자⁶⁵⁾,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미표시 무역거래자⁶⁶⁾, ㉢와 ㉣ 등에 나타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⁶⁷⁾, ㉤와 ㉥의 위반행위 및 표시방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자⁶⁸⁾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b. 과징금 및 과태료

- 과징금

<표 4-1>에서와 같이 과징금의 부과 및 금액은 「대외무역법」 제23조 제5항, 제39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54조의4, 별표1, 별표1의2)에 위반 유형별로 금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의 부과권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영 제116조 5항 단서)이나 대외무역법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거하여 세관장(영 제116조 5항 4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시도지사(영 제116조 4항 3호)에게 위임하고 있다.

63) 「관세법」 제276조 1항 3호.

64) 「관세법」 제276조 2항 4호.

65) 「대외무역법」 제55조 7호.

66) 「대외무역법」 제55조 8호.

67) 「대외무역법」 제55조 9호.

68) 「대외무역법」 제55조 8호의 2 및 10호.

<표 3-5>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금액

제23조 제5항		제39조 제5항	
위반행위	금 액	위반행위	금 액
①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자	위반물품 수출입신고금액의 10% 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① 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표시물품 수출, 수입자 또는 타인에 행하도록 한 자	위반물품 수출입신고금액의 10% 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②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자	上同	②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물품 수출 수입자 또는 타인에게 행하도록 한 자	上同
③ 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무역거래자	위반물품 수출입신고금액의 10% 또는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③ 표시대상물품에 미표시 수입자 또는 타인에게 행하도록 한 자	위반물품 수출입신고금액의 10% 또는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④ 표시방법 위반한자	上同	-	-

- 과태료

「대외무역법」 제60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118조 및 별표2에 의거 위반 회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대외무역법」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시·도지사,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영 제116조 제4항 제4호), 세관장(영 제116조 제5항 제5호)이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표 3-6>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처분 대상자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①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 재포장 또는 단순가공을 거쳐서 거래하거나 날개 또는 산물로 거래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미표시 유통물량 거래가격 또는 30만원 중 많은 금액	미표시 유통물량 거래가격 또는 300만원 중 많은 금액	1,000만원
②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	미표시 유통물량 거래가격 또는 10만원 중 많은 금액	미표시 유통물량 거래가격 또는 100만원 중 많은 금액	1,000만원

c. 시정조치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시정조치는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의 정정 또는 위반물품에 대하여 표시의 정정이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는 행정조치이다. 그러므로 허위·오인표시, 표시의 손상 또는 미표시의 경우에는 시정조치대상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와 함께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세법에 의한 시정조치는 통관단계에서는 통관을 불허한다.⁶⁹⁾ 그리고 이미 통관되어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에 반입을 명령한다.⁷⁰⁾ 대외무역법에 의한 시정조치로는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표시명령,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행위의 중지 등이 있다.⁷¹⁾

(2) 원산지표시 위반 범죄의 실태분석

①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

원산지표시 위반시 일반적으로 대외무역법만 위반하는 경우로 알고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당부분 관세법 위반과 경합범죄를 구성한다.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단속된 실적은 <표 3-7>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허위표시, 오인·손상, 미표시나 부적정표시 등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된 실적은 2002년 4,378건, 2003년 5,891

69) 『관세법』 제230조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70) 『관세법』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7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4조의2 (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건, 2004년 4,965건이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중에서 형사처벌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보면 2002년 460건으로 전체의 단속건수의 10.5%, 2003년은 374건으로 6.3%, 2004년은 278건으로 5.5%이다(류수현, 2005).

<표 3-7>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2002	2003	2004
허위 표시	113	106	56
오인·손상	88	118	106
미 표 시	1,612	2,291	2,526
부적정표시	2,565	3,376	2,276
합 계	4,378 (460)	5,891 (374)	4,965 (278)

주: ()는 형사처벌된 건수

이처럼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등이 있으나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표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표시에 의해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이다.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등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면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관세포탈범죄의 유혹을 쉽게 받는다.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수입하다 적발된 실적을 보면 <표 3-8>에서 보듯이 2000년 3건 36억2천3백만원 상당에 관세포탈액은 21억5천6백만원, 2001년 4건 10억2천7백만원 상당에 관세포탈액 2억4천6백만원, 2002년 3건 65억6백만원 상당에 관세포탈액 48억2천4백만원, 2003년 8건에 170억7천2백만원 상당에 관세포탈액 58억4천9백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2004년에도 8월까지 6건 98억4천1백만원 상당의 위장반입이 단속되었다.

2004년까지 위장반입하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고사리, 건고추, 녹두, 대두, 더덕, 명태, 백출, 버섯, 벗집, 북어채, 그리고 의류 등이다. 지난 2005년 5월에도 중국산 북어채 24톤이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되다가 정부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다(해럴드뉴스, 2005.8.18). 현재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주요 품목구조가 농수산물과 섬유류 물품이 중심이 되어 있고, 또 2005년에 들어 남북 농업협력위원회 1차회의(8.18~19, 개성), 남북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7.25~27, 개성),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위한 제1차 실무협의(8.23~27, 평양) 등 실무접촉이 성사됨에 따라 이에 편승한 북한산 위장반입 품목은 1차 산품 및 섬유류 제품(의류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표 3-8> 북한산 위장반입 단속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1-8
건 수	3	4	3	8	6
범칙시가	3,623	1,027	6,506	17,072	9,841
관세포탈액	2,156	246	4,824	5,849	1,269

자료: 2004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② 수사사례분석

a. 경찰청

【'인체유해' 캐나다산 녹용 판매업자 적발, 경찰청 보도자료 2003. 6. 30】

● 개요

수입 금지된 캐나다산 녹용을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위장 수입한 후, 시중 판매한 녹용 수입업자를 적발한 사례이다. 경찰청(외사3과)에서는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2회에 걸쳐 사슴 만성 소모성 질병(속칭: 사슴광우병)으로 수입 금지된 캐나다산 녹용 7톤(시가 13억원) 상당을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경유 북한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여 수입한 후, 그중 4톤을 ○○약업사 등에 11억원 상당에 시중 판매하고, 나머지 3톤은 판매할 목적으로 사무실 옥탑 창고와 안성 소재 ○○약업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녹용 수입업자를 적발, 영장 신청하였다.

● 내용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에 30여평 사무실과 옥탑에 12평정도의 냉장보관창고를 가지고 녹용을 수입판매하는 “○○○○○이당”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써,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제조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약 3년전부터 사슴 만성 소모성 질병이 발

생하여 수출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건녹용 7톤, 시가 13억원 상당을 중국 ○○수출입공사를 통해 북한 ○○무역상사(대표: 김○○)년 수출입 계약 체결 후, 북한을 경유 북한산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하여 수입한 후, 그중 2.5톤을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약업사(대표: 안○○)에 6억 7500만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4톤을 11억 상당에 시중 판매하고, 나머지 3톤은 판매할 목적으로 사무실옥탑 창고와 안성 소재 ○○약업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녹용 수입업자를 적발, 영장 신청하였다.

경찰청은 2002년 6월경 캐나다 녹용업자를 대리하는 “○○ Ltd”가 한국의 녹용 수입업자들에게 “한국은 캐나다산 녹용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어 선적이 불가하지만 미국 홍콩 중국 등 제3국을 통해서는 선적이 가능하다”며 자신들의 캐나다산 녹용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고, 일부 녹용 수입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이 바닥세인 캐나다산 녹용을 중국·북한을 경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수입하여 시중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피의자가 수입하여 일부 판매하고 보관 중인 캐나다산 녹용 3톤에 대해 압수봉인 조치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청 감별위원 및 한국양록협회 감별위원, 경동한약상가 녹용판매업자와 캐나다산 녹용 수입시 성분 검사만을 감정한바 있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산하기관인 시험연구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피의자가 북한에서 수입하였다는 녹용에 대해 감정의뢰하였다. 수입 녹용에 대해 캐나다산 녹용(엘크)이라는 일관된 감정결과가 나오에 따라, 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수입대금 등을 추적수사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적용법조 및 향후 조치사항

약사법 제56조 제11호 (국민건강 위해 우려있는 의약품등의 수입 제조

저장 진열금지) 및 제75조 제1항 제1호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대외무역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원산지 허위표시 등)를 적용하는 한편,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표기할 경우 원산지확인이 불가능하고 통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업자들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경유 캐나다산 녹용을 북한산으로 위장 수입하여 시중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b. 관세청

【60억상당 중국산 농산물 북한산으로 위장한 밀수입 적발, 관세청 정책속보 2004. 9. 23】

인천본부세관은 60억원 상당의 중국산 콩나물과 녹두 등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한 모회사대표 이모씨를 관세포탈혐의로 검거하였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인 조선족 방모씨와 공모해 2003년 2월부터 9월까지 입차한 중국선박에 중국산 콩나물콩 1730톤과 녹두 1300톤을 단둥에서 적재한 뒤 북한 남포항을 경유해 인천과 군산항으로 반입한 혐의다. 이씨는 북한 남포항에서 조선민족경제인연합회 소속 무역회사로부터 가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검사서를 발급받아 이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통일부로부터 북한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세관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씨는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전량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북한물품으로 속여 납품했으며 이에 따른 관세포탈액만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해 11월 중국 내몽고지역에서 생산된 건고추 650여톤을 육로를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옮긴 뒤 조선민족경제인연합회 소속 무역회사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산으로 밀반입한 모회사대표 김모씨 등 1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중국산 농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북한산 반입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산 둔갑 관세탈루” 단속강화, 관세청 보도자료 2003. 5】

북한산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그동안 일부 수입업자들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3국산 농산물(고사리, 호두 등)⁷²⁾ 우리나라로 반입하면서 북한산 물품인 양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최근 지속적인 단속노력에 의해 검거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과 같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한 중국산 녹두와 러시아산 명태에 대한 적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중국산 녹두 1,000톤 약 57억원 상당 위장반입(2002년 4월, 부산세관)

○ 포탈관세액 : 약 47억원

○ 범칙개요 : 천진항에서 중국산 녹두를 중국으로 수송 후에 인천항으로 수입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북한산 녹두로 반입신고한 것을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여 검거하고 관세포탈죄로 구속 고발하였다.

● 러시아산 명태 466톤 약 81억원 상당 위장반입(2003년 4월, 부산세관)

○ 포탈관세액 : 약 10억원(총 57회)

○ 범칙개요 :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으로 수송하여 마른명태(포, 채)로 건조가공 후에 북한 나진으로 내륙운송하여 북한 내에서 가공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채 국내에 반입신고한 것을 적발 검거하였다(북한산 위장 수산물사건으로는 최대규모).

72) 관세율은 녹두가 614.3%, 고추 273%, 고사리 91%, 호두 45.5% 등으로 매우 높게 적용된다.

c. 수사사례의 함의

농수산물품의 북한산 위장반입 확대 추세에 비해 원산지표시위반을 적발하고 원산지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러시아산 명태 등을 중국에서 마른명태, 명태포, 명태채 등으로 가공하여 북한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농수산물의 경우 북한국경 인근에서 북한산이라는 원산지증명을 받거나 위조하므로 북한산 위장으로 인한 관세포탈사건은 구체적인 이동경로 또는 원산지증명서 위·변조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범죄입증이 쉽지 않다.

③ 형사판례분석

a. 실질적 변형의 인정(대판 2002. 7. 26, 2001도4245)

【판시사항】

중국에서 제작한 미완성의 면타올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가공이 아닌, 세 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인데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당해 국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신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있어서의 HS관세율표 해설서 등에 의할 때, 당초 중국에서 제조되어 북한으로 보내진 미완성 면타올은 위 분류에 의하면 테리타올 지 직물로서 세번 HS5802에 해당하고 북한에서 이 미완성 면타올에 테두리 봉제작업을 함으로써 세번 HS6302에 해당하는 완제품이 된 결과,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이 북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며, 한편 이러한 북한에서의 테두리 봉제작업은 산업자원부고시 대외무

역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 소정의 최소가공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면타올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정확히 표시하여 수입한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거나 관세율 등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긍정한 사례.

b. 대법원 판결의 의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면타올의 상당부분을 중국에서 제조하고 마지막 사각테두리를 북한에서 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최소가공공정기준(Minimal Operation Rule)을 적용하지 않고,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기준 (Tariff Shift Rule)에 의해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따라서 대법원은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원심 서울고법 2001. 7. 18, 2001노177)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최소가공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북한산 위장 물품의 이동경로 또는 원산지증명서 확인의 애로 때문에 범죄입증이 어렵다. 반면 공산품의 경우에는 앞의 판례에서 보듯이 모든 공정을 제3국(중국)에서 가공하고 극히 미세한 부분만 북한에서 가공하였을 때, 법원에서 가공정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죄입증에 어려움이 많게 된다. 남북교역 활성화가 심화될수록 의류제품 등 가공도가 높은 2차 제품의 위장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처럼 최소가공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IV. 남북교역상의 주요 쟁점과 탈법위험-2: 전략물자 반출

1.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⁷³⁾

1)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개념 및 발전과정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국제 조약과 국제적인 합의 등에 기초하여 다수 국가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방법, 규제내용 등이 점차 변화하여 왔다. 대표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로는 핵무기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핵공급그룹 및 쟁거위원회, 생물화학무기와 관련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미사일 기술 수출 관련해서 미사일 기술 수출통제,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통상적인 재래무기와 이와 관련한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에 대한 통제체제로는 바세나르협정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라는 이름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근거를 신설하고,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정식으로 반영하였다. 그 후 2004년 12월에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전면 개정하여 그 운영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국제조약과 국제적 합의를 기초로 도입되었다.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자유주의 국가들 사

73) 이상진·윤남권의 연구(2005), 특히 pp. 254-259 참조.

이에 최초로 1949년 11월에 논의되고, 1950년 1월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라는 COCOM이 설립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서방국가들은 공산권 국가에 전략물자 및 기술의 제공을 엄격히 통제하였고 우리나라도 COCOM 협력국으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출통제의 대상물자, 기술, 대상 국가는 국제안보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어 왔다. 과거 동서 냉전구조는 1990년 독일의 통일,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그 목표와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다. 또한 신생 러시아는 공산주의 통치를 고수하지 않고 미국과 서방에 COCOM체제의 해체를 요청함에 따라 1994년 3월 COCOM체제가 해체되었다. 오늘날 초강대국 사이의 큰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나, 중동 걸프만, 팔레스타인,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 종교와 인종, 영토분쟁 등을 이유로 지역적인 분쟁이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안보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 생화학, 핵무기나 미사일을 보유하려는 우려국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통제하는 국제협약체가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로 구성되고, 해체된 COCOM은 1996년 7월 재래식 무기를 통제하는 협정형태인 네덜란드의 소도시 바세나르를 인용한 이른바 바세나르 체제(WA)로 다시 출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핵무기,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가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이전(移轉)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냉전 또는 대립 구도의 국제환경이 안보차원에서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규범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수출을 제한하는 무역질서, 정부의 역할과 기업책임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선진기업은 기업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채택하여 부응하고 있다.

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협정 및 최근동향

(1) 국제 비확산조약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 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regime)은 핵 비확산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 모두 가입해 있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저지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핵비확산조약(NPT)은 1950년대 말 폴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제시한 안을 기초로 하여 유엔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68년 3월 미·소 양국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NPT 공동초안을 제출하여 1968년 6월 유엔 총회에서 동 초안이 채택되었고 1970년 3월 5일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이행 준수를 위해 핵비보유 당사국으로 하여금 IAEA⁷⁴⁾와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PT는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의 권리와 의무를 상이하게 규정함으로써 차별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으나, 핵비보유국들이 가입하여 차별을 현실로 수용하는 추세이다.⁷⁵⁾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생물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사회 최초의 시도로서 1925년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물질의 전시사용 금지’를 위한 제네바 의정서가 체결된 이래, 1969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생·화학무기금지협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

74)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국제원자력기구)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기구.

75) 2005년 1월 현재 18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나, 주요 핵 기술 선진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미가입.

약'은 1971년에 UN 총회에서 결의되었고, 1972년 4월 10일 군축위원회에서 초안이 합의되었으며, 런던, 모스크바, 워싱턴에서 서명에 개방되어 1975년 8월 발효되었다.⁷⁶⁾ BWC는 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 곰팡이 등의 미생물 및 독소를 이용하여 제조한 생물작용제를 폭탄이나 그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인간이나 동식물의 기능·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1992년 9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채택되어 1997년 4월 29일 발효되었고, CWC는 전문과 본문 24개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무기의 생산·비축·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협약발효 이후 10년 이내인 2007년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⁷⁷⁾ CWC가 정의하는 화학무기란 독성이 높은 치사 화학물질, 탄약 및 장비 등 독성화학물질의 살포수단, 탄약이나 장비 운용을 위해 설계된 모든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2)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체제

국제 비확산조약이 체결되어 국제적인 목표를 정하고 가입국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불법적인 전략물자 확산을 저지하려 했으나, 미가입국이나 수입국에 확산을 저지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다. 따라서 대량파괴무기의 생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이 수출할 때 우려용도로 공급하지 않도록 수출통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에게 전략물자가 이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통제물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업체가 위반하거나 수입 후 우려용도로 전용하는

76) 2004년 12월 현재 151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북한은 1987년 3월에 가입.

77) 2002년 2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하여 167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1997년 4월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원당사국으로 참여.

등의 사례는 부적격거래자(Denial List)에 등재하고 회원국이 3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수출통제체제 구성은 핵무기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핵공급그룹 및 핵거래위원회(NSG : Nuclear Suppliers Group), 생물화학무기와 관련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Australia Group), 미사일 기술 수출에 관련해서 미사일 기술 수출통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통상적인 재래무기와 이와 관련한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에 대한 통제체제로는 바세나르협정(WA : Wassenaar Arrangemen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구성

		비확산 조약	국제체제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 핵비확산조약(NPT) · 설립 : 1970(한국가입: 1975) · 회원국 : 189개국	○ 핵공급국그룹(NSG) · 설립 : 1978(한국가입: 1995) · 회원국 : 44개국
	화학무기	○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설립 : 1997(한국가입: 1998) · 회원국 : 167개국	○ 호주그룹(AG)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 설립 : 1985(한국가입: 1996) · 회원국 : 39개국
	생물무기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설립 : 1975(한국가입: 1987) · 회원국 : 151개국	
	미사일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설립 : 1987(한국가입: 2001) · 회원국 : 34개국
재래식무기		○ 바세나르협정(WA) · 설립 : 1996(한국가입: 1996) · 회원국 : 33개국	

자료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http://www.sec.go.kr>)

핵공급그룹(NSG)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물질 등의 전용방지가 핵비확산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국제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NPT 비가입국의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력 전용물자에 대하여 공급국과 수령국 사이에 핵무기 전용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제대상 물품으로는 핵원료물질 및 특수핵분열 물질, 원자로, 중수소 및 중수, 원자로급 흑연 재처리플랜트 등의 원자력 전용품목과 수치제어 공작기계, 베릴륨 등의 핵관련 이중용도 품목 등의 총 86개 품목으로 통제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호주, 프랑스, 독일 등 44개국이 회원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호주그룹(AG)은 UN특별시찰단이 1984년 이란·이라크 전에서 화학무기 사용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수출통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설립되었다. 호주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시로 Policy Paper를 작성하여 배포하여 각 회원국이 수출통제에 반영도록 하고 있다. 수출통제품목으로는 화학무기 전구체, 화학물질 제조 장비 및 설비, 생물작용제 관련 물품, 병원균 식물 등의 수출통제품목으로 통제하고 있다. 회원국으로는 아르헨티나,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의 39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미사일통제체제(MTCR)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의 군사적 위협이 미약하게 인식되어 왔었으나, 핵탄두 혹은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MTCR에서는 로켓, 무인항공기 등과 그 관련기자재, 생물무기, 화학무기의 탑재가 가능한 소형 미사일까지 규제하고 있다. 회원국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탈리아, 러시아, 남아공 등 34개국이 가입하였다. 최근에는 동북아시아,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에서의 미사일 확산 우려와 경유, 환적, 중개 및 무형기술이전의 통제필요성, 그리고 위장 기업과 중개기업의 활동억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바세나르협정(WA)는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 방지를 목적으로 무기

및 개발, 제조, 사용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체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동유럽국가,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33개국이 가입하였다. WA는 수출의 허가, 불허가의 판단은 참가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국제적인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교환을 통하여 각국간의 정책협조를 표방하고 있다. 최근에는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에 의해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휴대용 대공미사일, 첨단기술을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이전하는 무형기술이전 등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논의되고 있다.

(3) 국제수출통제의 최근동향

수출경쟁을 무시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규범은 개별기업이나 국가경제의 명운과 직결된다. 규격·품질·안전·환경 등은 수출상품에 대한 요구기준이고, 반덤핑 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뇌물방지는 수출자의 행태에 대한 요구기준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수출품의 용도, 최종사용자, 거래 전 과정에 수출자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국제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에게는 아직 생소한 제도이나 이미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는 무역질서로 일반화 되어지고 있다.

2004년 국제수출통제회의에서 논의된 유엔 안보리 1540호 이행, 수출통제이행 기업인증제, RFID⁷⁸⁾ 채택, 수출통제통합의 움직임 등 국제사회에서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통제와 위반국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짐으로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질서는 변화되어지고 있다.

전략물자의 공급국가가 증가하면서 비회원국에 수출하기 위한 수출통

78)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인식기술

제에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이행 강제, 검증, 불법에 대한 제재를 새로운 국제질서로 만드는 유엔안보리 결의가 2004년 4월 28일 통과되었다. 이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수출통제 관련 물자의 연구개발단계에서 최종사용 단계까지 통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상황, 이행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모든 유엔 회원국이 6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가 새로운 국제수출통제규범의 첫줄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려집단이 불법적 절취보다 합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조달하려는 노력을 효율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대량 파괴무기 개발, 지원, 은폐 의사가 있는 국가는 철저한 무역금지 대상국으로 국제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UN안보리에서는 정부조직, 연구소, 기업, 민간인 등 비국가행위자가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할 경우 UN회원국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당사자를 처벌하는 법제화를 요구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전략물자 수출 통제만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전략물자의 중개, 통과화물, 환적, 재수출에 대한 통제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역업, 국내외 중개, 선사, 관세사 등도 규제 대상이 된다. 법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국경통제·적발(detect)·저지(deter)·차단(prevent)·소탕(combat), 필요시 국제공조, 불법적 밀거래, 중개(brokering)에 대한 통제집행수단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기업과 국민에게 의무를 알리고 작동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개발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수단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출화물에 대한 RFID기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출 통제를 잘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 채택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⁷⁹⁾

1)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제도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는 1987년 9월에 체결한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확보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Protection of Strategic Commodities and Technical Data)’의 국내적 실시를 위해 1992년 대외무역법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1992년 12월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제24조의 3은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를 보다 명료하게 추진하였으며, 2003년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현행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반영하였다.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국제 수출통제품목 이외의 물품, 기술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4년에 산업자원부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06년 5월 현재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주로 대외무역법(제21조), 동법 시행령(제39조~제45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 수출허가권자로서 포괄적인 수출허가권을 행사한다(대외무역법 제21조). 그리고 통제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품목과 기술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이 수출허가권을 가진다. 즉,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전용품목과 기술에 대해 수출허가권을 가지며, 국방장관은 방산물자에 대해 수출허가권을 가진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79) 이지석의 연구(2006), 특히 pp. 370-373 참조.

의거 통일부장관이 반출승인권자이다.

이러한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 수입에 허가, 승인, 추천, 확인, 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이다. 그리고 부정한 허가 또는 허가받지 않고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대외무역법 제54조), 수출입허가 등 위반, 외국 부적격거래자와 수출입한 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물자 수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시행령 제45조).

최근 정부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도가 국제적 무역규범으로 정착되어감에 따라, 국제연합안정보장이사회 결의문 제1540호에 의한 회원국 준수사항 및 현행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위장 수출사례 방지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바(2006년 11월 현재),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허가 기준의 명확화, 상황허가 기준의 명확화,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절차, 전략물자 신고 및 통보절차, 전략물자 중개허가 기준의 명확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있다.

2)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 및 위반사례

2003년 대외무역법이 새롭게 개정된 이후, 산업자원부가 집계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건수면에서 2003년 477건에서 2005년 55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금액면에서도 2003년 39억불에서 2005년 40억불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에서 허가된 것은 2003년 491건중 477건에서 2005년 588건중 554건으로 증가하였고, 거부된 것은 2003년 7건, 2004년 5건, 2005년에 2건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허가 신청금액은 2003년 1억2천만불

에서 2004년 3억7천만불로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는 2억1천만불로 줄어들었다. 또한 캐치올 허가실적으로는 2003년에 4건에서 2004년 11건, 2005년에 1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략물자와 관련된 품목류는 HS 10단위 1,351개(2004년 조사)로 관련 수출업체는 14,000여개(2003~2004년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및 허가현황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 중인 다자간 전략물자체제가 시행되기 이전 수치이므로, 향후 보다 강화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 시행된다면 수출규모 및 수출의존도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것이다.

<표 4-2>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불)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건 수	477	462	554
금 액	3,958	3,240	4,027

주: 금액에는 포괄허가 및 수출거래보고 금액이 포함됨.
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통계자료.

<표 4-3>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천불)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 청	491	117,589	493	477,468	588	217,278
허 가	477	116,221	462	373,879	554	214,799
반 려	7	715	26	103,118	26	2,274
거 부	7	653	5	471	2	205

주: 1) 2004년도 반려금액은 포괄수출실적 금액미포함.
2) 2005년 총신청건수 : 610중 2006년 결과(9건), 철회(19건)는 신청에 미반영.
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통계자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규 위반사례로는 다음 2가지 사례가 대표

적이다. 먼저, 2003년말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 리비아 사찰단이 NSG 수출통제품목인 발란싱 머신(Balancing machine: 모텔명과 한국제조업체명이 표기)을 적발하여 외교경로를 통해 사실 확인을 요청해 왔다. 정부의 조사결과, 2002년 6월에 무역업체 D사가 국내업체 H사가 제조한 발란싱 머신 4대를 리비아에 수출하였으며, 동 물품은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별표19(NSG 통제리스트)의 NR3.B.3.b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로 확인되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NSG의 통제품목을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D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둘째로, 산업자원부는 경기소재 무역업체 Y사에 대하여 전략물자인 산성플루오르화칼륨(Potassium Bifluoride)을 대외무역법 제21조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 수출한 혐의로 2006년 1월에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동년 3월에는 행정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위반업체는 형사처벌 외에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이 금지되었다.

3. 남북교역에서 탈법위험 실태

전략물자란 무기제조·개발에 이용가능한 민수용물품(이중용도물품)으로서 위험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말한다.

최근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특히 개성공업지구 진출 국내기업들의 설비·자재 반출에서 이러한 전략물자의 반출통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전략물자 통제업무는 9.11 테러사건 이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정부의 국제사회 신뢰저하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거듭 유의해야 한다. 현

재 한국의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는 국제적 통제체제⁸⁰⁾에 기초한 것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따른 것이 있다.

첫째로 한국정부는 국제적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부응하여 현재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등 국내법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대북 반출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전략물자 반출을 통제하고 있다.

둘째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통제로서 미국은 국내법인 EAR에 따라 북한 등 문제국가에 미국산 상품의 재수출, 미국 기술·소프트웨어가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된 외국산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별로 수출통제품목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북한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된 제품은 미 상무부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개성공업지구의 전략물자 반출문제와 관련 현재 정부는 한국무역협회 산하에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동 센터와 산업자원부 공동으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Strategic Items Information System)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통제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EAR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남북관계에서 갖는 의의

80) 한국이 체결·가입한 국제적 전략물자 통제체제에는 양자적 형태로서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1987.9)가 있으며 다자적 형태로는 ① 냉전시대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를 1996년 7월에 대체한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② 대량살상무기(WMD)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③ 핵확산 방지를 위해 원자력 관련 기술과 장비의 거래를 규제하는 핵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④ 화학·세균무기의 개발에 관련된 기술과 물질을 통제할 목적으로 호주정부가 설립을 주도한 호주그룹(AG: Australia Group) ⑤ 핵 관련 물자수출 시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토록 하는 쟁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 등이 있다.

와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엄격한 기준과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직통전화 연결 지연 사례가 시사하듯이⁸¹⁾ 남북교류의 진전은 적지 않은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통신(KT)은 2005년 3월 북한 조선체신회사와 개성공단 통신부속 합의서를 체결하고 개성공업지구 직통전화 연결을 위해 2005년 7월 미 상무부에 전송장비 7개 반출품목의 EAR 저축 여부 심사를 요청했으나 승인이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4개월만인 지난 11월 17일 미 상부무로부터 반출승인을 받아냈다.

미 상무부는 이에 앞선 10월 8일 “전화교환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북한에 반출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에 저축된다”고 한국통신(KT) 측에 통보한 바 있었으나 KT와 한국정부는 교환기 사용의 투명도를 높이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지속적인 재협상 노력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직통전화 연결되면 향후 북측과 협의를 통해 이동통신은 물론, 인터넷 연결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EAR 규정은 전략물자 품목이 아니라 건 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번 미 상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81) 『중앙일보』, 2005.11.10; 『연합뉴스』, 2005.11.17.

V. 결 론: 제도적 대응방안

본 연구는 제도를 규칙(rule)과 같은 의미로 정의하는 오스트롬의 견해를 원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도 法制를 중심으로 한 시각과 범위에 한정되었다. 남북교역에서의 원산지표시 위반 및 전략물자 반출에 따른 탈법위험 대응방안 역시 법제의 설계(institutional design)와 집행(implementation)을 중심으로 모색하려 한다. 즉 비공식적 제도(informal institution)를 포괄한 종합적 대책이 아니라 공식적 제도 차원(formal institution dimension)의 대책으로서 주로 관련법규의 정비, 규정 마련에 근거한 조직·인력 구성과 제도 운영에 중점이 두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응방안의 내용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 법규 및 조직 정비, 제도 집행단계에서 감시절차의 고도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규 정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북한산 물품으로의 위장반입 시에 이를 적발하여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산 위장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 원산지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남북간에 원산지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면 북한산 위장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절차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국내법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위장반입사건의 유죄입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3년 7월 31일 채택된 남북 원산지합의서에서는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해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원산지판정 세부기준에 관해서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원산지판정 세부기준에 대한 부속 합의서 체결을 위해 북측과 협의해나가야 한다. 남북교역물품의 실질적 변형여부 판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원산지합의서 제8조는 북측과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한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은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 적용이 예상되는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 등 실질적 변형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남북 양측이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⁸²⁾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일반교역물품의 경우와 같은 완전생산기준, HS 6단위변경기준, 불인정공정기준만 정하고 있어 실질적 변형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즉, 남한의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남한산 직접재료비의 60% 이상을 남한에서 일시반출하여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하여 다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남한산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북한산 원산지 판정여부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국내 원산지규정의 경우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외에 남북교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와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통일부의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의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발급에관한고시」 등 각 부처별 고시로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규정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당해 부서의 실무자가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

82) 원산지합의서에서는 추후 남북원산지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로 하였으나 2003년 12월 17-20일 평양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또 2005년 7월 9-12일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제2차 원산지확인 실무접촉을 2005년 9-10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연합뉴스』, 2005.7.12).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할 기업들도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관세법 등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물자 반출입 통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규의 제정보다는 기존 법규정의 자율준수제도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것으로 본다.

기업내부자율준수제도는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영업부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제도를 담당하는 조직을 갖추고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부 허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수출허가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로써 ICP(International Compliance Program), 혹은 EMS(Export Management System)로도 통용되고 있다.

외국의 채택사례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중견 제조업체, 무역업체와 같은 기업에게 CP도입은 통제대상 해당여부 판단 및 필요한 허가절차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예기치 않은 전략물자 수출 연루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위험관리의 제도로 중시되고 있어 미국, EU 등 선진국 기업에는 일반화 되고 있다.

미국의 기업내부자율준수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법 및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수출통제시스템을 수출통제 당국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정보를 기초로 이행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다. 미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국제규범을 제공하고 있듯이 미국의 기업내부자율준수제도 역시 전 세계 기업에 의한 내부 자율준수제도의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EU 국가들은 WA 등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EU의 Code of Conduct 등에 기초하면서도 각국의 정치·경제·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출 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출통제체제의 주안점은 적절하지 못한 수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두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최종 책임은 기업에 있고, 기업은 적절한 내부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영국 등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들 조직내에 기업의 CP(Compliance Program)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지도하기 위한 부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부서를 통하여 기업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CP의 이행여부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CP의 적절한 이행을 유도하고, 동시에 수출통제 담당자 등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고 4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제도 이행을 위한 모습을 갖추었으나 기업의 이행실태는 미흡하다. 그러나 우리 수출품이 첨단·고도화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수출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업들이 자율적 수출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지침이 될 만한 표준자율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기업이 이를 이행함으로써 대외무역법 등을 준수하고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위해를 미칠 수도 있는 행위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고 있다(이상진·윤남권, 2005: 266-267).

이와 같이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는 무역 규제로 인식되기 쉬우나 선진국에서는 이를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남북교역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또 하나의 비무역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이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역질서에 적극 참여하여 남북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능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2. 조직 정비

생산공정의 글로벌화 및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의해 국제통상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무역관련 범죄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FTA 등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원산지제도가 이제는 단순한 통관절차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와 생산방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부상하고 있으며,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관세 특혜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무역 범죄에 대응하여 전문수사조직을 설치할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전담부서에서 수출입물품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위반 범죄, 지적재산권침해 범죄 등을 망라한 무역범죄를 전담하는 한편 북한산 위장반입 범죄와 전략물자 불법수출범죄 역시 여기서 집중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 이의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수사요원들의 양성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원산지규정과 수출통제제도의 이해, 대외경제정보의 수집 및 분석, 수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원산지규정위반 범죄의 경우 해당 부서의 전문수사요원들이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표시방법과 원산지확인절차, 원산지증명서의 생략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존 무역범죄수사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수사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감시절차의 고도화

관세면제를 악용한 북한산 위장반입은 국내 농어민의 피해를 유발하고 관세를 포탈하는 범죄행위로서 건전한 남북교역 진전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감시 및 단속체계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 위반 반입실태에 대한 정기적 정보분석 실시와 사례 DB 구축, 감시단속기법 개발을 통하여 통관전 단계,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통관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반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원산지규정 위반물품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상적인 남북교류와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위험관리기법(risk management)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통관 품목과 업체를 고위험(high risk) 및 저위험(low risk) 분야로 구분하여 이중 우범성이 높은 품목이나 우범업체들을 대상으로 선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남한의 관세당국은 일반적인 수입에 있어서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행정상의 효과적인 위험관리기법 체제가 구축된다면 남북한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에 있어서도 반출입 절차는 간소화시키면서도, 원산표시 위반 밀수입 등의 적발비율은 현재보다 훨씬 높일 수 있다. 나아가서 전략물자 반출입의 위험에 대한 사전 통제 효과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관리기법의 근간은 다년간 축적된 업체에 대한 정보, 품목에 대한 정보 등의 자료들을 필요로 하며, 또한 북한 세관당국의 축적 자료 미비, 전산망 미비 등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200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위장반입 문제가 집중 제기된 것을 계기로 통일부, 법무부, 농림부, 해수부 등 유관부처 공동으로 위장반입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오고 있다. 주요 조치로는 위장반입 빈발품목인 북어류, 호두, 대추, 고추 등 10여개 품목을 집중감시 품목으로 설정해 반입통제를 강화하고 위장반입업체에 대해서는 반입 승인 및 협

력기금 대출을 불허하고 있다(국정브리핑, 2005. 3. 17). 관세청의 경우에도 위장반입 개연성이 상존하는 농산물 등 고세율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가고 있다(관세청뉴스, 2005. 7. 13).

경찰청에서도 향후 남북교역 급증에 따른 무역관련 범죄의 대형화·지능화·다양화에 대비하여 통일부, 관세청 등 유관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산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한 상호 정보제공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경찰청은 이들 유관부서와 범죄수법, 범죄경향, 위장반입 업체 현황 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제도화함으로써 효율적 감시단속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전략물자 반출 통제의 경우에도 기관공조 형태로 대응해야 한다. 즉 통제 실패 결과가 가져오는 높은 위험성 때문에 그 대응은 시간을 다투며, 반드시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해야 한다.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 및 통관 관련 업무는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무역업체의 동일서류 반복제출 및 관련기관의 사후관리 기능 미비와 통관 시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 여부 및 수출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판정 및 허가정보가 세관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략물자 정보시스템과 관세청의 통관 정보시스템간 연계정보의 대상 및 범위, 우선순위 선정과 특정 전략물자의 집중관리 대상선정 및 업무 절차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등에 의한 안전성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심사 및 판정기준, 허가결과, 통관결과 등 변경정보의 갱신주기 설정과 미허가 물품의 보완통보 및 통지절차와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판정/허가정보 및 통관결과 등 전략물자 관련정보를 통관시스템과 상호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이상진·윤남권, 2005: 266).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권오(2005),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 김석오(2003), 「남북간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의 주요내용과 의의」, 『관세와 무역』 2003년 10월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_____ (2005), 「한·EFTA FTA 관세분야의 주요내용과 향후」, 『관세와 무역』 2005년 9월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류수현(2005),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처분 동향」, 『관세와 무역』 2005년 5월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문준조(2002),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한국법제연구원.
- 박노형(2000). 「WTO體制에서의 南北韓 貿易去來의 地位」, 『法曹』 통권 530호, 法曹協會.
- 이명구(2005. 6. 3), 「남북교역관련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 『한국관세포럼 창립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 이상진·윤남권(2005),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국제적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수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 이장희(2004. 4. 9), 「남북경협 활성화와 국제규범 검토 및 정책방안」, 『제2차 남북경협포럼 발표논문집』, 남북경협운동본부.
- 이지석(2006),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분석과 전망」,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 장명봉(2004. 4. 9), 「남북경협의 법제도적 해결과제와 개선방안」, 『제2차 남북경협포럼 발표논문집』, 남북경협운동본부.

- 제성호 외(2003),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 정 웅(2005a), 『남북한 관세협력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 _____(2005b), 『남북교역의 법적 환경과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19호, 치안정책연구소.
- 최양식(2005),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제도 및 향후 과제』, 『관세와 무역』 2005년 5월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04), 평양 법률출판사.
- Eggertsson, T.(1990),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th, D. C.(1990),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trom, E.(1986), "An Agenda for the Study of Institutions", *Public Choice*, 48.
- <http://www.assembly.go.kr>(국회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관세청 홈페이지)
- <http://www.joins.com>(중앙일보 홈페이지)
- <http://www.kcnti.or.kr>(한국관세무역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ita.net>(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http://www.news.go.kr>(국정브리핑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unikorea.go.kr>(통일부 홈페이지)
- <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 홈페이지)
- <http://www.sec.go.kr>(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책임연구보고서 2007-10

남북교역에서의 탈법위험과 제도적 대응방안

A Study on Illegal Risk in th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

2007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